

# 교육혁신추진단 운영 규정

제정 2016. 10. 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혁신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본 추진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역량지원 계획의 조정
2. 학생역량지원의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
3. 교수역량개발지원
4.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NCS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생 지원 관련 업무 총괄

**제3조(조직)** ① 추진단에는 단장을 두며, 추진단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추진단은 교수학습지원센터, NCS지원센터,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를 둔다.

**제4조(운영위원회)** ① 추진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회는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NCS지원센터장, 학생진로심리상담센터장, DK인증센터장, 취·창업지원처장, 교학처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
3. 학생지원 관련 지침 및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4. 교수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

5.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

**제5조(평가 및 환류)** ① 학생지원 향상을 위하여 학생지원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시행 후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한다.

② 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고한다.

③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, 프로그램 개선 실적을 차기년도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한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201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